

본회, 자조금 시행규칙(안) 마련

◇…본회는 자조금 적립 등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4월 9일 대한양계협회, 낙농육우협회와 공동으로 자조금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발법」 시행규칙(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다음은 본회 등 3개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시행규칙(안) 전문이다. <편집자 주> ◇

농 특 어 별 촌 조 발 치 전 법	제13조(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수산부장관은 특정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이 생산자단체를 조직하여 당해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조성방법, 운영방법, 보조대상이 되는 농수산물과 보조금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 행	제19조(자조금의 조성방법)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은 특정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가 조성한 자금과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조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단체가 조성하는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조성기준, 운용, 관리, 집행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령 (안)	제20조(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수산물의 범위)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유 2. 돼지 3. 닭 4.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수산물
시 행 규	제21조(보조금의 지급기준 등)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단체가 농어민으로부터 조성하여 자조금으로 매년 적립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칙 (안)	제 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①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조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거출업무는 도축장, 도계장, 우유 및 계란처리장 등 농산물 처리장 또는 배합사료공장 등의 운영자가 대행한다(이하 “대행자”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는 매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제 2조(자조금의 조성기준) ①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단체가 농산물처리장 또는 배합사료공장 등에서 거출하는 자조금의 조성기준은 국내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종별로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제 3조(자조금의 관리) ①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금의 관리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업종별 생산자단체(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자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별로 자조금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를 지정코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은 자조금을 집행할 여건이 성숙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자조금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단체부터 지정하여야 한다.

제 조(자조금의 운영) 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업종별 생산자단체별로 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조(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1)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은 축산업자, 학자, 공무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중 업종별 축산단체가 추천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임명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과반수는 축산업자로 임명되어야 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중에서 직접 선출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자조금으로 충당한다. 단, 경비는 자조금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모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업무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는다.

제 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심의

2.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한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심의

3. 기타 자조금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조정

제 조(자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는 연 2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임시회의는 업무진행에 필요한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 의결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 의결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회의일정과 의결사항에 관하여 모든 위원과 업종별 축산단체장,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조(자조금의 집행) 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금의 집행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축산물 소비 촉진사업

2.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사업

3. 조사연구사업

4.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5. 신제품 개발사업

6. 정책개발사업

7. 기타 자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조(과태료) (1) 시행규칙 제 조(자조금의 조성방법)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다.

제 조(자조금의 운영세칙) 이 시행규칙 이외의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조성기준, 운영, 관리, 집행 등 필요한 세부 시행방법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행

규

칙
(안)